

## 2019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공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 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획기관 및 농업법인, 농식품 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농촌진흥청장 김 경 규

### <2019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수도권	‘19. 1. 08(화) 13:00~18:00	(서울) 양재 엘타워 메리골드홀
호남권	‘19. 1. 09(수) 13:00~18:00	(전북)익산 실용화재단 대강당
영남권	‘19. 1. 10(목) 13:00~18:00	(경북) 대구 EXCO 325호

○ 내용

- 2019년 재단 지원사업별 세부설명회, 1:1 맞춤형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

## 공고 개요

가. 사업명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나. 세부사업명 : 『2019년도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다. 응모자격 :

### Track 1 농자재 효과검증 :

(기획기관)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검·인증 관련 기획 지원 역량(전문인력, 지원체계, 수행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업)

※ 기(既) 개발 농자재 또는 농자재 관련 (이전)기술의 수요형 제품화를 위해 신뢰성 검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인증 컨설팅 및 대행 업무를 수행

### Track 2 융복합 기술·제품 효과검증 :

(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농업법인 및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업체

※ 농업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검증을 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식품산업체

### < 응모 결격 사유 >

- ①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 된 사업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③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⑤ 접수마감일 현재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⑥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라. 지원내용 : 사용 환경 조건에서의 검증, 공시 등 인증을 위한 검증, 시장 검증 등 기술·제품의 신뢰성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분	Track 1 농자재 효과검증	Track 2 융복합 기술·제품 효과검증
정부 지원금	*농업인 과제당 최대 3천만원	과제당 최대 6천만원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90% 이하 (농업인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70% 이하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물+현금, 현금10%이상)

※ 기획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할 농업인 과제는 별도 공고·선정

#### 마. 기술료 납부 의무 고지

- 당해년도 선정된 업체가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징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결정기준 >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기술료 감면)에 따라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율(10~40%) 달리 정함

바. 사업공고 : 공고일 ~ '19. 1. 30(수) 18:00까지

사. 접수기간 : 공고일 ~ '19. 1. 30(수) 18:00까지

아.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9. 11. 30(토)

## 자. 선정평가일정

- 1차 서면평가 : '19. 1. 31(목) ~ 2. 1(금)
- 2차 대면평가 : '19. 2. 21(목)
- 3차 현장평가 : '19. 2. 25(월) ~ 3. 8(금) \* (Track 2) 융복합 기술·제품 효과검증에 한함

※ 부채비율 1,000% 초과업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면평가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하며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5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에 공지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처 미기입 또는 결과공지·통보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주의할 것

## 차. 우대 및 감점사항

가점 \* 가장 높은 1개만 가점 인정

연번	우대 사항	가점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2점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②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2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2점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⑤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⑥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1점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의한 인증업체	1점	인증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⑧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 인증업체	1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⑨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I인증 제품생산업체	1점	가공식품KSI인증서															
⑩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⑪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⑫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기획사업R&D기획지원 참여업체	3점	*R&D기획사업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적용															
⑬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업체(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보유)중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업체	2점	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⑭	기술력 분석 90점이상 : 2.0 80-90미만 : 1.6 70-80미만 : 1.2 60-70미만 : 0.8 60점미만 : 0.4점	0.4-2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력 분석 결과															
⑮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2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⑯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창업보육업체	2점	* 창업보육업체 확인서															
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인증서															
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⑲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⑳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	5점 ~1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b>정부지원금 대비 과제관련 매출 성과</b> ※ 성과등급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지원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등급기준</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50이상</td> <td>5</td> </tr> <tr> <td>B</td> <td>30이상~50미만</td> <td>3.5</td> </tr> <tr> <td>C</td> <td>1이상~30미만</td> <td>2.5</td> </tr> <tr> <td>D</td> <td>0초과~1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성과등급	등급기준	가점	A	50이상	5	B	30이상~50미만	3.5	C	1이상~30미만	2.5	D	0초과~1미만	1
성과등급	등급기준	가점																
A	50이상	5																
B	30이상~50미만	3.5																
C	1이상~30미만	2.5																
D	0초과~1미만	1																
㉑	기술사업화 일자리창출 성과등급	5점 ~1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b>정부지원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수</b> ※ 성과등급 = 신규 일자리창출수 × 10억원 ÷ 정부지원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등급기준</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50이상</td> <td>5</td> </tr> <tr> <td>B</td> <td>30이상~50미만</td> <td>3.5</td> </tr> <tr> <td>C</td> <td>10이상~30미만</td> <td>2.5</td> </tr> <tr> <td>D</td> <td>0초과~10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 지원 당해연도 실적이며, 취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성과등급	등급기준	가점	A	50이상	5	B	30이상~50미만	3.5	C	10이상~30미만	2.5	D	0초과~10미만	1
성과등급	등급기준	가점																
A	50이상	5																
B	30이상~50미만	3.5																
C	10이상~30미만	2.5																
D	0초과~10미만	1																

□ 감점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협약체결 후 사업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사업에 신청한 경우	2점
③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조사시 미응답 또는 조사거부	3점
④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매출 미발생이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3점

## 2 사업과제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과제제안서(첨부1~8 포함)를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업체명(사업책임자명)’으로 하며, 대표자와 책임자의 주소, 연락처(일반 및 핸드폰),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  
예) 000컨설팅(홍길동)
- 사업과제제안서는 15페이지 이상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3 사업과제제안서 등록방법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에 접속하여 ‘제안요청서(RFP)’ 메뉴바에서 ‘세부사업명(농업기술·농자재 등의 효과검증)’을 검색하여 RFP 확인(로그인 불필요)
- ATIS 회원등록 후 로그인하여 주관과제 등록
  - 주관과제 등록 시 절차 및 방법은 [붙임 4] 참조
- 등록 시 주의사항
  - 주관과제 등록은 2019. 1. 30(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당일 18:00이후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이 폭주하여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주의할 것
  - 연구과제제안서 등 업로드파일 총 용량은 120MB 이하이어야 함

## 4

## 과제선정 절차

### 가. 평가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1차 서면평가 (19.1.31~2.1)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차 대면평가 (19.2.21)	대면평가 (1차 평가로 선발된 사업)	선정평가위원회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현장평가 대상으로 함	
3차 현장평가 (19.2.25~3.8)	현장평가 (2차 평가로 선발된 사업)	선정평가위원회 (2차 평가위원에서구성)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협약 대상으로 함	
과제선정 및 협약 (19. 3월 중)	대면평가 점수 × 0.5 + 현장평가 점수 × 0.5 + 우대가점 - 감점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7조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에 의거 선정평가대상 선정 시, 동 지침 제62조 제4항에 의거 서면평가를 생략 후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3차 현장평가는 (Track 2) 융복합 기술·제품 효과검증 에 한함

## 5

## 행정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과제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과제응모 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표평가 시 응모책임자(대표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사.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처 미기입 또는 결과공지·통보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자	연락처	Email
김주완	063-919-1352	itsnil@efact.or.kr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관련 문의전화 : 1544-8511



**【붙임 1】 2019년도 신규 공모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과제제안서 서식**

**【붙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붙임 4】 2019년도 공모과제 응모방법**

**【붙임 5】 2019년도 공모과제 평가방법**

**붙임 1****2019년도 신규공모과제 목록**

어 젠 다	대 과 제	주관과제명	시작	종료	과제 수행	총연구비 (백만원)
6	17	농업기술·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2019	2019	외부	480

○ 신청구비서류 목록

No.	서식 명	해당여부
①	(Track 1) 농자재효과검증 (기획기관) 사업 신청서	필 수 (해당 지원분야 선택)
②	(Track 2) 융복합기술제품효과검증 (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사업 신청서	
③	신용상태·정보제공조회 동의서	필 수
④	청립 서약서	필 수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 시
⑥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필 수
⑦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 수
⑧	재무제표	필 수
⑨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해당 시

※ 참고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최종 선정 후 사업 협약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

[첨부-1] (Track 1)농자재 효과검증(기획기관) 신청서

**2019년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기획기관 신청서** \* (Track 1) 농자재 효과검증

<b>기관(업) 개요</b>	기관(업) 명			설립 일	년 월 일	
	홈페이지			상시근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최근연도)	백만원		자본금 (최근연도)	백만원	
	사업 분야			기관(업)구분	영리( ), 비영리( )	
	주 소					
	전 화			팩 스		
	대 표 자	성 명		핸드폰		
		전 화		e-mail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 위		
		전 화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2019년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에 대한 기획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 책임자 : (인)

대 표 자 : (직인)

**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획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해당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3. 표준재무제표증명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5. 사업계획서(첨부 서식)

# I. 일반 현황

## 1. 신청기관(업)의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업) 명					
대 표 자 명					
기 관(업) 유 형*					
기 관(업) 형 태*					
설 립 년 월 일					
기업재무구조 (최근3년,백만원)	구 분	'00	'00	'00	
	총 자산				
	자기자본				
상 시 인 력	박 사	석 사	학 사	고 졸	계
주된 사업분야*					
매 출 현 황 (최근3년,백만원)	구 분	'00	'00	'00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기관(업)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연구소 등

※ 기관(업)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 주된 사업분야 :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 2. 주요 전문가 약력

성 명				생 년 월 일	
부 서 명		직 위		전 화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주요실적 및 업적	관 련 내 용				수행기간

※ 기획기관으로 지정시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포함하여 기재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주요실적 및 업적은 당해 효과검증 기획지원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 II. 사업 추진 여건

### 1. 조직 및 인력 현황

####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인원수(명)
합계		

※ 신청기관(업)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 효과검증 기획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관련 업무 관리조직을 기재

#### 나. 기획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명	직급	주요경력 (경력년수)	자격사항 (취득년도)	주요실적 및 업적

※ 신청기관(업)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사업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자격증보유자 및 관련 경력자 순으로 작성하되, 경력은 동 사업관련 실적을 기재

#### 다. 기획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해당 시)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Ⅲ. 사업 추진 계획

※ 효과검증 기획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등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 수행 방안을 기술

#### 1. 사업 목표

####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업)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 효과검증 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

### Ⅳ. 사업비 산정

※ 참여기관에 대한 기획지원 비용 산출 기준 제시  
 (총사업비(정부출연금+참여기관 자부담) 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제시 (붙임 계상기준 참고)

항목	세부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
인건비	내부인건비			
	:			
직접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간접비	회계감사비	고정비 *협약 수정계획서 작성 시 별도 안내	1,000,000	
	:			
합계				

※ 인건 또는 직접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내까지 계상 가능

<별 첨> 효과검증 기획지원 관련 실적 목록 및 증빙사본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등)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자유양식으로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붙임 1-1>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Track 1)농자재 효과검증(기획기관)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p>①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기획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기획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p> <p>②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여액으로 한다. 실지급여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③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p> <p>1.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p> <p>2.과제책임자는 20%이상, 참여연구원은 5%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④기획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할 수 있다. 단, IP기획지원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화기획지원은 총 사업비의 70%이내까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내부 인건비</p> <p>①내부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p> <p>②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p> <p>③기획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 2개월 이내에 채용된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를 의미한다.</p>
	<p>외부 인건비</p> <p>①외부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p> <p>②사업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여액을 해당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p>
직접비	<p>①기술정보수집비</p> <p>1.R&amp;D기획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자료 수집 경비</p> <p>2.R&amp;D기획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정보(DB 등) 조사 경비</p> <p>②전문가 자문비</p> <p>R&amp;D기획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자문비로, 기획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p> <p>③국내외 외부위탁비</p> <p>R&amp;D기획지원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p> <p>④회의비</p> <p>R&amp;D기획지원 수행에 필요한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실 경비(회의장 사용료,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p> <p>※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계상</p> <p>⑤출장비</p> <p>R&amp;D기획지원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지출증빙에 따른 실소요 경비</p> <p>※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계상</p> <p>⑥인쇄·복사비</p> <p>R&amp;D기획지원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복사비용 및 사업완료시 보고서 인쇄제본비</p> <p>⑦연구활동비</p> <p>1.참여 농업인·농식품산업체에 대한 과제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p> <p>2.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p> <p>3.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진흥비</p> <p>4.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p> <p>1.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진흥비</p> <p>2.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p> <p>⑧공공요금 및 제잡비</p> <p>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p>
간접비	<p>①회계감사비</p> <p>②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IP기획지원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p> <p>③참여 농업인·농식품산업체 이외 또는 개인명(농업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p>



[첨부-2] (Track 2) 융복합기술·제품효과검증(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신청서

# 2000년도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사업신청서

\* (Track 2) 융복합기술·제품효과검증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1) 지원 기술(제품)의 개요	*기술일 경우, 기술의 명칭(발명기관) / 권리번호 / 실시계약기간 명시 예시) 자동운전 농기계(국립농업과학원) / 출원(등록)번호:10-2009-00000000 / 20△△. X. X ~ 20△△. X. X * 제품일 경우, 제품명 / 제품개요 명시				
2) 사업과제명	예시) 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3) 신청자	명칭(상호)		홈 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력분야		업체형태	영리( ), 비영리( )	
	업체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연구소, 기타	최근연도 매출구성요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연도 매출액	백만원	최근연도자본금	백만원	
4)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전화(휴대전화) ( )		
	팩 스		e-mail		
5)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6) 과제수행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 . . .까지 (약 개월)				
7) 예상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 주력분야 :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주된 사업 분야를 기재 ※ 최근연도 매출구성요소 : 주된 사업분야의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농업기술실용지원사업 운영규정(관련지침 포함)에 따라 <b>과제수행계획서</b> 를 첨부하여 <b>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지원</b> 사업을 신청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과제 책임자 : (인)					
<b>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b>					
(첨부)					
1. 과제수행계획서(붙임서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과 제 수 행 계 획 서

## 1. 과제개요

### 가. 과제의 목표

#### (1) 정성적 성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 (2) 정량적 성과 목표

성과 지표명	<sup>1)</sup> 세부내용	단위	<sup>2)</sup> 목표	<sup>3)</sup> 시장최고수준 (보유기업/보유국)	<sup>4)</sup> 가중치 (%)	<sup>5)</sup> 측정기관
예) OOO 성능검증	1. 속도	m/min	15m/min 이상	25m/min(3M, 미국)	20	OOO시험연구원
	2.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OO대학교
	3. RF 출력	dBm	10dBm 이상	20dBm(보쉬, 독일)	25	OO표준원
	:	:	:	:	:	:
예) OOO 인증	1. 유기농자재 인증	1건	공시	토양개량및작물생육용왕겨 (S바이오, 한국)	40	OOO시험연구소
	:	:	:	:	:	:
예) OOO 시장검증	1. VOC	1건	상품, 마케팅 적용	토양개량및작물생육용왕겨 (S바이오, 한국)	20	OO건설팅
	:	:	:	:	:	: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sup>1)</sup> 주요 성과지표 세부내용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sup>2)</sup>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sup>3)</sup> 시장최고수준으로 작성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수요처의 요구수준 등 타당한 수준을 제시하고 사유기재  
<sup>4)</sup>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sup>5)</sup> 측정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자체평가(주관기관, 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3) 평가지표

성과 지표명	주요지표	시료 정의	1) 측정시료 수 (n≥5개)	2) 측정방법 (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예) 000 성능 검증	1 속도	시스템 2식	-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미터로 측정된 후 계산에 의해 풍량을 구함
	2 소음	시스템 2식	-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3. RF 출력	시스템 2식	-	상온 25℃, 전파차단 장비의 전 대역에 대하여 규정된 출력전력을 1시간 동안 방사하여 규정된 출력전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	:	:	:
예) 000 인증	1. 유기농 자재 인증	제조사편	10개	주성분, 비효/비해, 약효/약해
	:	:	:	:
예) 000 시장 검증	1. VOC	1건	300개	고객패널조사, 시장 시뮬레이션
	:	:	:	:
<p>※ 시료수 5개 미만 (n&lt;5개) 지표 사유</p> <p>○ 예) (성능지표 1) . . .</p>				

1)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기재

2) 측정방법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 . . , JIS . . . )하고, 공인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표준, 규정, 매뉴얼 등), 측정환경 등을 기재

나. 과제 내용요약

○
○

다. 과제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
○

## 2. 과제수행 계획

### 가. 과제의 목표 주요내용

- ※ 기술적, 시장성, 사업적 측면 등에서 서술

### 나. 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및 과제 필요성

#### (1) 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 ※ 대상기술(제품)의 특징, 기존기술(제품)과의 차별성, 우위성, 응용성, 대상 기술(제품)의 진척도 등 상세히 기재
- ※ 대상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2) 과제 필요성

- ※ 대상기술(제품)의 경제·산업적 중요성 서술
- ※ 대상기술(제품)의 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미래성장성 서술

### 다. 과제수행전략

-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 ※ 기능별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수행 전략을 명기

#### (1) 기술(또는 제품) 결과물 도출 과정

- ※ 최종 산출물 도출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2) 기술(또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

- ※ 신뢰성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 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 제품의 경우는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3) 기술(또는 제품)의 마케팅

- ※ 제품의 경우는 제품화 이후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라. 과제수행에 따른 효과 및 활용방안

- ※ 과제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산출물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 활용정도 및 기여도를 서술

### 3. 수행업무분장

※ 주관기관, 외주용역처리 등 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과제수행 비중(%)
주관기관		
위탁기관(해당 시)		
총 계		100%

-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과제수행비중이란 전체 과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 4. 세부 추진일정 ※작성요령 참조

세부 수행내용	사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상용화 실적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공동/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 나. 이미 개발하였거나 판매 중인 제품(개발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번호	제품명	연간매출액	주요 성능(또는 기능)
1			○ ○

## 6. 참여인력

### 가. 사업 책임자

####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국문)	(한문)	(영문)
직장	직장명			전화
	부서		직위	FAX
	주소	우편번호		E-mail
주택	주소	우편번호		휴대전화

#### (2) 학 력

연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 교	전 공 명	

#### (3) 경 력

연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 (4) 주요 연구(기술사업화) 실적(최근 3년간)

연구제목	연구기간	실적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5) 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실적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책임자/연구원)	참여율 (%)

### 나.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사업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 7. 관련기자재·설비 보유현황 및 필요내역

구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기보유 기자재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주)우리회사

### 8. 사업비 총괄

가. 사업비 요약(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금액					
비율					100%

나. 민간부담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민간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신청자(주관기관)				(100%)

다. 사업비 비목별 총괄(단위 : 천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				1,000		

### 9.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붙임 계상기준 참고

가. 사업비 총괄(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신청자(주관기관)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직접개발비		
	사업활동비		
간접비	회계감사비	1,000	
합계			

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소요명세(단위 : 천원)

구분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A)	사업참여기간(B)	참여율(%) (C)	합 계 (A×B×C)			현물계상 여부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			
	신규									
	소 계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사업참여기간(B) × 참여율(C)

※인건비는 총 민간부담금의 50%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의 경우 신규인력에 한해 가능

(2) 직접비 소요명세

구분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직접 개발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시약·재료구입비							현물	
	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	:	:	:	:	:	:	:	
	위탁 연구비 (해당시)	직접비 간접비							
소 계 (A)		천 원							
사업 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소 계 (B)		천 원							
합 계 (A+B)		천 원							

※ 지정된 시험연구/검정기관을 통한 검증 비용은 사업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계상 (총사업비의 70% 이내)

(3) 간접비 소요명세

구분	단가(천원)	수량(건)	금액(천원)	용도
회계감사비	1,000	1	1,000	세부사업비 정산
합 계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1,000천원)는 필수로 포함시키며, 최종 사업선정 시 금액 조정 예정

<붙임 2-1>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Track 2)융복합기술제품효과검증(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p>①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p> <p>②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③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p> <p>④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p> <p>1.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사업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p> <p>2.과제의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3.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사업과제책임자 사업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p> <p>㉡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사업</p> <p>㉢세부사업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위탁연구개발과제</p> <p>⑤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p> <p>⑥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4-1]과 같다.</p> <p>⑦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p> <p>⑧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영리기관에 한함),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시 [별지 제4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한다.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분부터는 접수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p> <p>⑨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유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p> <p>⑩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단,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현물 계상 가능).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p> <p>⑪외부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p> <p>⑫사업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p> <p>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전문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p> <p>⑭「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그 외 전담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60 1778 754 1821">계상 비율</th> <th data-bbox="754 1778 967 1821">인력구분</th> <th data-bbox="967 1778 1428 1821">현금계상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0 1821 754 1912" rowspan="2">내부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민간부담금의 50% 이내</td> <td data-bbox="754 1821 967 1912">기준</td> <td data-bbox="967 1821 1428 1912">계상 불가</td> </tr> <tr> <td data-bbox="754 1912 967 2009">신규</td> <td data-bbox="967 1912 1428 2009">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td> </tr> </tbody> </table>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내부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민간부담금의 50% 이내	기준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내부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민간부담금의 50% 이내	기준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p><b>직접 개발비</b></p> <p><b>①연구기자재 및 시설비</b>  1. 해당사업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2. 사업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공급가액 1천만 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9호]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 3.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6.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40% 이내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p> <p><b>②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b>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p> <p><b>③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b>  1.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40% 이내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p> <p><b>④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은 직접개발비의 40% 이내, 단일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30%이내로 하여야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b></p>
	<p><b>직접비</b></p> <p><b>사업 활동비</b></p> <p><b>①사업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5%이내</b>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검인증, 심사분석, 진단기획, 실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또는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에 한해 직접비(현물포함)의 85%이내 까지 가능하다.</p> <p><b>②출장여비</b>  1.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p> <p><b>③수용비 및 수수료</b>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p> <p><b>④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b>  1.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2. 전문가활용비는 사업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p> <p><b>⑤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b>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p> <p><b>⑥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b>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p>
	<p><b>간접비</b></p> <p>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통평가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만 계상할 수 있다. 단, 보안사업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보안관련 실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p>











[첨부-6]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그림파일로 삽입

[첨부-7]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증명서 발급 사이트 : [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그림파일로 삽입

[첨부-8] 재무제표

※ 그림파일로 삽입

[첨부-9]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명서(해당시)

※ 그림파일로 삽입

### 붙임 3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ATIS 주관과제 응모시 엑셀파일(NTIS 유사중복성 검토양식)로 제출

항 목	내 용 (작성방법)*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제안서에 있는 과제명 입력(한글기준 128자 미만) - 필수항목
과제공개여부	- 입력한 과제내용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Y/N) 입력(Y : 공개, N : 비공개) - 필수항목
연구책임자명	-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성명 입력 - 한글기준 15자 미만 - 필수항목
과제관리기관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력 - 선택항목
연구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목표에 대한 요약 입력 - 한글기준 50자 이상 2000자 미만 - 필수항목
연구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예상결과 등 요약 입력 - 한글기준 50자 이상 2000자 미만 - 필수항목
기대효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요약, 관련 산업의 공정과정개선, 사업화 및 파급효과 등 입력 - 한글기준 50자 이상 2000자 미만 - 필수항목
한글키워드	- 한글키워드는 8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입력 - (예)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 필수항목
영문키워드	- 영문키워드를 8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입력 - (예)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 필수항목

## 2019년도 신규과제 응모방법

### □ 과제 응모 방법

#### 1. 응모 서류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응모자(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NTIS 유사 · 중복성 검토 자료 [엑셀 파일로 작성(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 2.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ATIS) 홈페이지 로그인

(<http://atis.rda.go.kr>)

※ ATIS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구원’으로 회원 가입 후  
연구원 승인 요청 (☎ 1544-8511)

#### 3.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 신규작성



#### 4. 필수정보 입력 · 파일 업로드 → 정보저장

- ① '과제제안요구서(RFP)' 돋보기 클릭 → 과제종류에서 농업기술실용화지원 - 농업기술·농자재 등의 효과검증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 클릭  
→ **리스트 중 농업기술·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을 선택**
  - '기준년도' : 2019년 선택
  - '응모과제명'은 연구과제제안서에 작성한 사업과제명을 적을 것
- ② 연구책임자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됨
  - '세부(협동)책임자'는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선택할 것  
(본 과제는 연구책임자와 세부책임자가 같음)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하단의 찾아보기 버튼 클릭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 ③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 선택  
'보안여부' : 일반, '공개가능여부' : 가능 체크
- ④ '제안서 파일' : 첨부 (**농업기술·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신청서 및 제안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첨부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첨부  
'NTIS 중복성검토' : 첨부  
(NTIS 유사중복성검토 양식 다운로드 후 NTIS 유사중복성검토 내용을 기입하여 첨부. 엑셀 파일)
- ⑤ 정보저장 버튼 클릭  
: 등록 완료 (정보저장) 후 주관과제응모에 재접속하여 응모한 과제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응모된 것임

공부번호	가공일정	공부일자	2019.12.27										
<b>①</b>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과제제정의수서(ARP)                  -기부번호 <input type="text" value="선택"/>                  -공부제정일 <input type="text" value=""/> (한글)             </div>													
<b>②</b>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연구책임자                  성명 <input type="text" value=""/> E-Mail <input type="text" value=""/>                  연락처번호 <input type="text" value=""/> 연구실 <input type="text" value=""/>                  연구 <input type="text" value="선택"/> 학위 <input type="text" value="선택"/>                  소속기관 <input type="text" value=""/> 계약기술연번호 <input type="text" value=""/> </div>													
<b>③</b>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세부(협동)협력책임자                  연구참조자 <span style="float: right;">연구참조자</span>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성명</th> <th>소속기관</th> <th>계약기술연번호</th> <th>선택 과제 작성일 확인서</th> <th>연락</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1. 공동책임자는 세부협력책임자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2. 세부 협동 협력책임자는 협동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p>                 지역 <input type="text" value="선택"/> * 연구수행기관의 유한지위를 선택하십시오.                  * 보안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 과제신청일시 시연실로써연수로 신청됩니다.                  * 공개가능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가능 <input type="radio"/> 불가 * 연구데이터공개서비스(ARD)를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으신 경우가 선택하십시오.             </div>				성명	소속기관	계약기술연번호	선택 과제 작성일 확인서	연락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성명	소속기관	계약기술연번호	선택 과제 작성일 확인서	연락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메모 *최대 한글2000자 (4000 Bytes)까지   현재   2/20													
<b>④</b>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과제서예본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계약안본 계약 및 후원동의서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모든 종료자는 기간일부 적용 및 종료일시 확인을 입력하십시오.                  기입할때 과제 확인서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모든 종료자는 기입일시 회사 확인서 확인을 입력하십시오.(필합자)                  NTI특수사용목적성명도록 <input type="button" value="DOWN"/>                  NTI특수사용목적성명도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NTI특수사용목적성명도, 당시 다변으로 후 기입 특수사용목적성명도 사용용 기입해서 입력하십시오.                  과제서PDF제본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div>													
* 첨부파일 용량은 최대 120MB입니다. 용량이 120MB 초과될 경우 파일을 압축하거나, 이미지파일 포맷을 변경하십시오.													
<b>⑤</b> <input type="button" value="다음 단계로"/> <input type="button" value="취소하기"/>													

**붙임 5**

**2019년도 공모과제 평가방법**

[별지 제40호 서식] 효과검증 서면평가표

**농업인등이연구개발한농업기술및농자재등의효과검증 서면평가표**

세부사업명	예) 농업인등이연구개발한농업기술및농자재등의효과검증		
접수번호		평가일	20 . . .
사업과제명	예)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효과검증		
신청업체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과제 수행계획 필수사항 검토	신청자격	1. 국가 R&D 제제정보	( )	( )			
		2. 국가 R&D 유사과제	( )	( )			
		3. 경영(신용) 안전성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비부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과제 수행계획 세부검토	추진 필요성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0	16	12	8	4
		2. 대상 기술(제품)의 적절성	20	16	12	8	4
	과제 수행계획	1.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12	9	6	3
		2.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12	9	6	3
	추진 여건	1.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12	9	6	3
		2. 참여인력의 적정성	15	12	9	6	3
합 계			점				
평가의견							

평가위원

(인)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대면평가표

\*(Track1) 농자재 효과검증 (기획기관)

세부사업명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접수번호		평 가 일	20 . . .
사업과제명	Track1 농자재 효과검증		
신청업체		사업책임자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평가등급 (해당란에 √ 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추진 여건 (45)	전문인력(상근) (35)	○기획 전문인력 총 수 (상근) -10명이상-5, 8명이상-4, 6명이상-3, 4명이상-2, 2명미만-1	10	8	6	4	2
		○기획 전문인력의 농식품산업 사업수행 경력 -5회이상-10, 4회이상-8, 3회이상-6, 2회이상-4, 1회이상-2	10	8	6	4	2
		○기획 전문인력 주요실적 및 업적의 우수성	15	12	9	6	3
	기업 재무건전성 (10)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10	8	6	4	2
사업 계획 (55)	사업목표 (20)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16	12	8	4
	추진내용 및 전략 (35)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5	12	9	6	3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8	6	4	2
		○추진절차 및 일정의 적정성	10	8	6	4	2
평가위원 의견							
총점			점				

2019. 00. 00

위 원 : (서명)

[별지 제41호 서식] 효과검증 주관기관(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대면평가표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대면평가표**

\*(Track2) 융복합 기술·제품 효과검증 (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세부사업명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접수번호		평가일	20 . . .
사업과제명			
신청업체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예) 해당할 경우 기재	위탁연구기관	예) 해당할 경우 기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 (25)	1. 제품(기술)에 대한 이해(10)	제품(기술)에 대한 활용, 사전준비성	10	8	6	4	2
	2. 개발의 필요성(15)	대상 제품(기술)의 적절성, 독창성 및 차별성, 정책 부합성	15	12	9	6	3
사업성 (30)	3. 시장성장 가능성(15)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15	12	9	6	3
	4. 사업화실현 가능성(15)	목표시장 진입 및 실현가능성 (경쟁 정도, 법적·제도적·정책적 규제 등)	15	12	9	6	3
사업계획 (25)	5. 사업계획의 체계성(10)	현 수준대비 검증 및 실증 달성 가능성 (목표, 추진내용 등 사업계획 합리성 및 충실성)	10	8	6	4	2
	6. 투입인력의 적정성(5)	투입인력, 수행팀 구성의 적정성	5	4	3	2	1
	7. 사업비의 적정성(1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실현성	10	8	6	4	2
경영능력 (20)	8. 사업책임자 능력(10)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 및 추진력	10	8	6	4	2
	9. 경영(신용) 안전성(10)	사업수행기관의 경영(신용) 안전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10	8	6	4	2
<b>합 계(100)</b>							

평가의견	
------	--

평가위원 (인)



[별지 제44호 서식] 효과검증 주관기관(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현장평가표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현장평가표**

세부사업명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접수번호		평가일	20 . . .
사업과제명			
신청업체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예) 해당할 경우 기재	위탁연구기관	예) 해당할 경우 기재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대담자			(인)
			(인)
			(인)

필수 확인사항	확인여부	비고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검토)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원본)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기자재 보유 여부		
참여인력 근무여부(4대 보험)		
신청업체 재무제표		
생산시설 공간 확보여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실용화 의지 (30)	1. 경영자 의지 (10)	1-1 경영자의 기술사업화 의지	10	8	6	4	2
	2. 과제수행역량 (20)	2-1 수행 전담조직	10	8	6	4	2
		2-2 수행 참여인력의 우수성	10	8	6	4	2
<b>소 계</b>							
실용화 능력 (70)	3. 사업 실현가능성 (15)	3-1 법적·제도적·정책적 충실성	15	12	9	6	3
	4. 제품 생산능력 (35)	4-1 생산설비 및 사업장 확보	20	16	12	8	4
		4-2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	15	12	9	6	3
	5. 마케팅 능력 (10)	5-1 마케팅 계획수립 및 채널확보	10	8	6	4	2
	6. 사업비의 적정성 (10)	6-1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의 실현성	10	8	6	4	2
<b>소 계</b>							
<b>합 계</b>			점				

평가의견	
------	--

평가위원 (인)